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

2024.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3
2.	채용신체검사비용 부담 부적정	(시정)		5
3.	예산편성 절차 부적정	(주의)		7
4	법인카드관리 소홀	(시정)		10
5	규정 개정 미비에 관한 사항	(통보)		12
6	용역계약 과업 설계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14
7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 부적정	(시정)		16
8	물품관리 업무 소홀	(주의)		18
9	경북학숙 중도입사자 선정 관련	(통보)		21
10	수선유지비 지급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23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진흥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경상북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예금계좌는 개설된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좌명에 용도(결제대금, 세입세출외 현금 등)를 기재하되, 결제대금,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은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자금 관리를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관리할 때에는 결제대금,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을 구분하여 목적별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다른 계좌와 혼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보통예금계좌를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만을 구분하였을 뿐, 수입금과 결제대금계좌의 구분없이 목적사업별로만 구분하여 개설하였고, 각 사업별 계좌로 수입금과 결제대금이 함께 입출금되는 등 보통예금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 재정자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채용신체검사비용 부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인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신규 직원에 대한 채용 등 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17조(구비서류) 제2항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항에서는 최종합격자의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에 따른 검사비용은 진흥원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채용시험 과정에서 최종합격자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전담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지정 및 협약을 통하여 사전에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자비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비용만큼 환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담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지정 등 검사비용 부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자비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은 인원에 대하여 검사비용을 환급하지 아니하여 최종합격자에게 검사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당하게 전가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은 해당 서류 제출자에게 반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편성 절차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1. 예산 편성 보고 소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행정사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안) 편성 시 예산(안)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예산의 변경 시에는 7일전)까지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등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각 연도별 예산(안)을 편성하였거나,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 또는 변경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21년 3차 추경 예산 등 8건의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도 경북도지사에게 관련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예산 편성 협의 소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에 대하여는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지도 감독 기관인 경상북도에서는 예산담당관-14225(2019.12.03.)호¹⁾에 의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예산의 편성은 소관 부서 검토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이사회 상정 전에 출연기관인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안건 상정 이전에 道 소관부서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2021년 3차 추경예산(안) 등 7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道 소관부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道 소관부서의 예산 편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형해화되고, 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2020.12.10. 기관 통합 전 (재)경북장학회에서 접수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법인 카드를 예산 집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흥원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경상북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계좌번호), 카드번호(비밀번호), 보관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하며, 출납원 등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흥원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 사용자가 사용 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원장에게 보고하여 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감사일 현재 총 5장의 법인카드를 발급·사용하면서 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고, 매월 원장에 대한 카드 사용내역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집행을 위한 2개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반납관리를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진흥사업 등 사업비 집행을 위해 발급한 3개의 사업비 카드의 경우 반납관리 없이 사업 담당자 관리하에 사용하고 있는 등 법인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사용 중인 카드에 대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 및 사용 후 반납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규정 개정 미비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하 ‘행동강령지침’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각각 인사에 관한 사항, 임직원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1조에서는 징계의 효력으로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원 「인사규정」 제38조에서는 “강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기간 중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사항

진흥원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원 「행동강령지침」[별표2]에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본부장 이상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벗어난 금액을 허용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관련 제 규정을 법률 등 상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계약 과업 설계 및 완료검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경상북도●●●●●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 자료를 제작·보급하기 위하여 ●●●●● 영상 제작물 조달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경북형 온라인 ●●●●● 「경북●●●」 영상 제작	△△△△△	2022. 10. 10	2022. 10. 10 ~ 2022. 12. 31	100,000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용역목적물을 인수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성 후 완료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용역계약 추진 시 완료검사 시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할 용역 목적물의 과업을 명확히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용역 목적물을 완료한 때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목적물이 완성되었는지 검사한 후, 계약 위반 사항이 없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합격을 통보하고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 영상 제작과 같이 영상의 최종본이 완성되려면 영상 초안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안에 대한 중간 납품 후 검수기간을 고려한 최종납품 기한 등을 설정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대하여 완료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과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 ○○○○○에서는 “경북형 온라인 ●●●● 「경북●●●」 영상” 제작을 추진하면서 계약기간을 20△△. △. ㉞부터 20△△. ㉠. ㉠까지 00일간²⁾으로 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20△△. ㉠. ㉠까지 편집 초안을 납품하고, 검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추후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과업지시서를 설계하여 20△△. △. ㉞ 교육 동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문가의 검수 절차가 남아 수정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되지 않은 초안에 불과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20△△. ㉠.□□ 완료검사를 실시한 후 20△△. ㉠.■에 용역 대가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이후 재수정 사항을 요청하여 20㉠㉠. ○월 이후에야 최종 완성본을 납품 받았다.

그 결과 최종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 전 용역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인해, 진흥원이 최종 목적물에 대한 품질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20㉠㉠.◇.◆.에 유사한 과업내용(계약금액: 00,000천원)으로 추진한 「경북●●●」 2부 영상 제작 용역의 경우 제작기간을 0개월 정도로 계약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은 부양가족이 있는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있다.

1.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진흥원의 「보수규정」 [별표1]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³⁾”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3)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 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따라서 진흥원 ★★★★★에서는 가족수당의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지급대상 으로부터 부양신고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지급하며, 매년 1회 가족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인을 받는 등 가족수당 운영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에서는 가족수당 신청절차 누락 및 운영실태 점검을 하지 않아, 20㉠㉠년 ㉠월에서 20㉠㉡년 ㉠월 기간 동안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소속 직원 1명에게 가족수당 0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2. 복지점수 지급 부적정

진흥원에서는 「임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6조 복지점수는 점수 900점을 기본으로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인당 50점)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진흥원 ★★★★★에서는 복지점수를 부여할 때 소속 직원의 현재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에서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0㉠㉠년 ㉠월에서 20㉠㉡년 ㉠월 기간동안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소속직원 1명에게 ㉠년간 복지점수 000점(0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000원, 복지점수 000점(000원)은 지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 규정」 등에 따라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물품 불용처리 및 폐기 절차 미이행

진흥원은 「재무회계규정」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의하면 사무처의 예산운영,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6조(회계 및 물품 관직 지정)에 따르면 물품관리관⁴⁾은 각 ○○○장, 물품출납원⁵⁾은 ★★★★★장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불용품의 처리는 동일 규정 제55조에서 ○○○○○장이 보유물품 중 노후, 훼손, 사용가지의 상실, 그밖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하고,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의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수급계획 및 통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재물조사 등의 전결권자는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진흥원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물품 관리를 위해 불용물품의 가액을 판정하여 ●●●●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불용처리와 폐기를 행하여야 했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2024년까지 ●●●●●에서는 0회 000개 물품 (00,000천원 상당)을 불용결정 및 처분하면서, ●●●●장의 승인없이 물건을 폐기하는 등 물품 불용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재물조사 용역 검사 업무 소홀

「재무회계 규정」 제48조(준용)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발견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는 등, 용역 전반 이행에 대한 검토와 결과물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했다.

그런데도 진흥원은 20○○○년부터 20△△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물조사 용역(물품대장 일치 및 RFID전자태그 부착 등)을 시행하면서, 결과물 확인 뿐만 아니라 RFID 물품 태그 미부착(00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종료시키는 등 물품 관련 용역 검사에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진흥원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목적과 달리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진흥원이 망실·파손 등 재산 상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경북학숙 중도입사자 선정 관련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
에서는 매년 경북학숙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조
(사업)에 따르면 진흥원은 경상북도의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도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북학숙 건립·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며
「경북학숙 운영규정」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입사생의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선반하며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입사생 선발 후 결원이 발생시 충원 인원과 선발자격은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자격자의 선발심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 모집 정원의 10퍼센트를 우선 선발하고 학업성적
80점, 생활정도 20점 합계 100점으로 하며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정도를 우선으로 하고, 생활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 ○○○○○○에서는 20○○○년 2학기 입사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입사생을 선발하며 결원인원에 따른 충원 인원과 선발자격은 생활 정도를
감안하여 □□□□장이 따로 정하여 심사평점기준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진흥원 ○○○○○에서는 20○○년 2학기 입사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입사생을 선발하며 충원 인원과 선발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입사자격자의 선발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없이 네이버폼으로 입사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순서에 따라 2학기 추가 입사생 00명을 20○○. ㉠. ㉡. 선발하였다.

이로 인해, 입사생 엄선으로 사내 질서 확립과 면학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목적과 달리 입사생 선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입사 절차와 관련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원 인원에 대한 선발 자격 등의 기준을 수립하시고,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 입사생을 선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선유지비 지급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과 ○○○○○○은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 및 시설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흥원의 「재무회계 규정」 제6조 회계 및 물품 관직 지정에 따르면 재무관은 ○○○○○장, 지출원은 ★★★★★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29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통해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의서를 작성하고, 재무관은 지출 원인을 하였을 때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32조 (지출의 절차)에 따라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예산 지출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지출 원인행위를 통해 재무관 및 지출원의 재정합의를 진행한 후 업무를 추진하고, 지출의 절차에 맞추어 그 집행을 요구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진흥원의 ★★★★★과 ○○○○○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0회의 0,000,000원에 대한 수선유지 건(컴퓨터실 수선유지, 감사실 설치, 프린터 설치 등)을 시행할 때, 예산의 집행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재무관과 지출원의 사전 승인 없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에, 해당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자 20△△년 ○월 ◇일 행위 마지막 일로부터 000일 지난 후에서야 ★★★★★에서 20○○년 ►월 ◇일에 일괄 회계처리를 완료하고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진흥원 행정의 대외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